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(공통사항 필히 숙지)

■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2018. 1월 ~ 12월
- 지원대상 :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
- 선정방법 : 일반공모
- 소요예산 : 1,366백만원(지특 683, 도비 683)
- 지원분야 : 문화예술 전 분야
- 지원기간 : 2018년 3월 ~ 12월
- 지원형태 : 활동 분야별 지원

※ 신작창작 활동, 예술서적 발간, 예술일반 활동(전통 시조창 포함), 원로예술인 활동(신설)

■ 추진방향 및 체계

• 추진 방향

- 지원신청, 교부신청, 성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의 온라인 시스템화로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(NCAS, e나라도움 사용)
- 교부 신청 기간(대관확정시 혹은 사업시행 1개월 전) 및 변경신청기간(사업 1개월 전)의 명문화로 무분별한 계획 변경 방지
-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창작활성화 및 예술적 역량 강화 도모

• 추진 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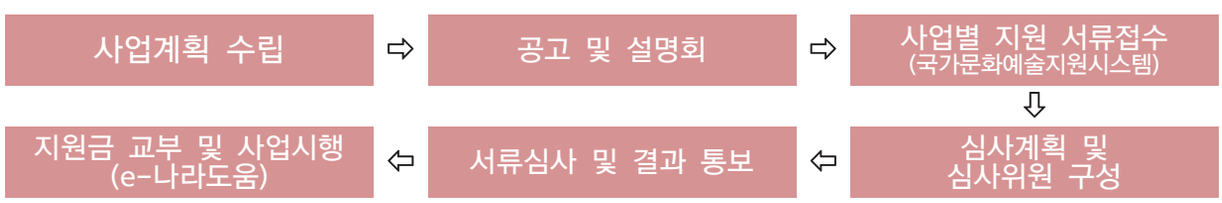

■ 신청기준(공통사항)

-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이념과 각 단위사업의 목표 부합하는 모든 문화예술분야 사업
- 경상남도 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
-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

- 경남도민으로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
- 경상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에 한함.

  ※ 신청기준 내용은 지원 분야 별 재확인 필수

  ※ 동호회, 아마추어 단체는 지원제외

■ 정보공시

- 일천만원(10,000,000원)이상의 모든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보공시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함.

■ 중복지원 배제

- 동일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, 산하기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

  ※ 선정후라도 지원결정을 취소함.

■ 총사업비 중 일부 지원

-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 경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지원 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·성격·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

■ 응모결격 및 지원취소 사유(공통사항)

- 사업 진행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
- 2017년도 사업 불이행 및 포기 단체

  ※ 단, 포기신청기간 내 포기한 단체는 예외(선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)
- 과거 사업 성과보고서 미제출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된 단체
- 언론, 학교 및 운영단체, 국·도 지원 동일사업, 전통분야이지만 종교 성격의 사업, 종교성이 강한 작품, 정치성을 반영한 작품은 지원취소
- 현직 교사·교수(교육관련 부처의 자기개발, 활동 등의 명목 지원)는 지원불가
- 기존 임차하여 상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임차료 지원불가

■ 지원신청 분야

구 분	신청 대상	지원 내용	예산	비고
신작창작 활동	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	o 신작 창작과 발표 · 시각, 문학분야 : 3백~1천만원 · 공연, 다원분야 : 3백~2천만원 · **단, 협의단체 제외**	375백만원	미 발표작품 (편작 제외)
예술서적 발간	전문예술단체 (협의 단체)	o 문화예술분야 예술지 등 · 전 분야 : 3백~2천만원 · **단, 개인, 월간지 및 잡지 등 제외**	100백만원	일반단체 및 개인은 제외
예술일반 활동	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	o 문화예술 활동 · 전 분야 : 1백~5백만원 · **전통 시조창 발표 포함**	650백만원	단체의 경우 소속 회원이 예술인이라는 증명이 되어야함
원로예술가 활동	전문 원로예술인	o 문화예술 활동 · 전 분야 : 5백만원 정액	100백만원	2018.1.1 기준 만 65세 이상 지원가능 (53년 이전 출생자)

■ 심사방식

사업	심사방식			비고
	서류검토	서류심사	통합심사	
신작창작 활동	■	■	■	
예술서적 발간	■	■	■	
예술일반 활동	■	■	■	
원로 예술인지원	■	■	■	

■ 지원결정 방법

- 각 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- 공모를 통한 심사·결정(사업별 통합심사 진행)
- 신청단체 대비 지원단체 신축적 결정
-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 경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지원 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·성격·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

■ 신청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17. 12. 27 ~ 1. 25 진흥원 · 경남도 · 18개 사군 홈페이지
- 접수기간 : 2018. 1. 2 ~ 1. 25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접수

  ※ 세부 내용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참조

■ 향후계획

- 지원사업 공고(도내 관련기관 홈페이지) : 2017. 12. 27 ~ 2018. 1. 25
- 지원신청 접수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) : 2018. 1. 2 ~ 1. 25
- 심사 및 지원단체(개인) 선정 : 2017. 2월 중

2018년 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 공모 신청 총괄표

사업명			지원신청 예술분야		지원신청 자격		비고
			시각 · 문학	공 연	개 인	단 체	
문화예술지원사업	문화예술육성지원	신작창작 활동 ※ 예술단체 및 개인 (협의단체**제외**)	●	●	●	●	–
		예술서적 발간 ※협의단체 지원	●	●	–	●	–
		예술일반 활동 ※ 예술단체 및 개인	●	●	●	●	–
		원로예술인 활동 ※ 만 65세 이상 원로 예술인 개인	●	●	●	–	–

※ 2018년도 모든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중복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선정은 1개 단체(개인) 1개 사업임

※ 개인은 2년간 휴식년 적용.
2015년도 수혜⇒ 2018년도 신청가능/ 2016년도 수혜 ⇒ 2019년도 신청가능

가. 신작창작 활동 ※공통사항 필히 숙지

■ 사업목적

- 창작작품 활성화 및 기초문화예술 발전 도모

■ 지원신청 자격

- 경남지역 소재지 예술단체 및 예술인
- 설립 3년 이상, 연간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**(협의단체 제외) 및 예술인**
- 3년간 도내 활동 실적 증빙이 되는 도내 거주 **예술인(개인 신청자)**

  ※ 개인은 2년간 휴식년 적용.

  ※2015년도 수혜⇒ 2018년도 신청가능/ 2016년도 수혜 ⇒ 2019년도 신청가능

■ 지원규모

- 문학, 시각예술 : 3백만원 ~ 1천만원
- 공연예술, 다원예술 : 3백만원 ~ 2천만원

■ 지원대상 및 내용

- 신작창작 제작단계에서 최종 발표까지

분야	사업내용	비고
문학	- 신규 · 창작 형태의 문학 작품집 및 동인지 발간 - 2018. 12. 31일까지 창작집 발간 가능한 사업	
시각	- 미술 · 사진 · 건축 · 영상 · 기타(영화, 웹툰) 등 다수의 작가가 참여하는 신규 · 창작 전시회 및 전시작품 - 2018. 12. 31일까지 창작전시 가능한 사업	
공연·다원	- 연극 · 무용 · 음악 · 전통 · 다원예술 분야의 작품에 대한 예술단체의 신규 · 창작 공연 - **2018년 경남도내 행사장에서 발표**되는 사업	

※ 신작 창작 작품만 지원(미발표 작품포함)

※ 단, 기 발표된 작품 또는 편작은 신규 창작으로 인정하지 않음(지원제외)

※ 기 발표된 작품 또는 편작이라고 판정되었을 경우 지원취소 및 보조금 환수

연례행사 지원불가 (“예술일반활동” 지원가능)

■ 지원금 지급방법

- 사업시행 1개월 전에 교부하며, 사업에 따라 분할지급 할 수 있음
  - 교부신청, 사업계획서 제출 시 신작 창작 증빙자료 등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

■ 지원신청방법

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(http://www.ncas.or.kr) ▸ 로그인(아이디 없을 경우 회원가입) ▸ 지원신청 ▸ 문화예술육성지원 ▸ **신작창작 활동분야** ▸ **①문학, ②시각예술, ③연극, ④무용, ⑤음악, ⑥전통예술, ⑦다원예술** 해당분야클릭 ▸ 지원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▸ 저장하기 ▸ 최종제출하기 클릭

■ 첨부자료

- 최근 3년간 실적(2015~2017) 및 개인전시, 공연 및 등단 증빙자료
- 최근 3년간 실적(2015~2017) 및 개인전시, 공연 및 등단 증빙자료
- 전문예술단체등록증 / 고유번호증 (개인은 주민등록초본 제출)
- 작품관련 자료 : 신작창작과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일부내용

■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심사 제외 대상
  - 기존에 공개된 작품 지원 불가
    (2018년도 신작 및 미발표 작품 이어야함)
  - 제출원고 중 기 발간된 개인 작품집에 수록된 원고가 포함되어 있거나, 문예지, 신춘문예, 신인문학상 등에 발표된 작품 지원불가
  - 현직 교사·교수(교육관련 부처의 자기개발, 활동 등의 명목 지원)는 지원하지 않음
  - 타인의 작품이나 표절작품이 포함된 경우 지원불가
  - 타 공공기관 기금 수혜 후 성과보고(출판 및 정산)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
  - 기타 재단의 '지원신청 제외 대상자'에 해당하는 경우
- 동일인이 장르 (시, 시조, 소설(단/장편), 평론, 희곡, 동시, 동화)간 중복신청 불가
- 현실성 있는 예산산출과 보조 받을 수 있는 최소의 금액을 신청 할 것
- 신청하는 창작자의 이름(예명 인정하지 않음), 발표단체를 정확히 기록
- 선정되었으나 최초 지원신청 계획서 내용의 30%이상 변경 될 경우 선정취소
- 기존에 공개된 작품, 편곡, 편작은 지원하지 않음
- 연례행사 지원불가("예술일반활동" 신청가능)
- 타인(개인)의 작품, 편작, 기존작품이 속할 경우 보조금 지원취소 및 전액환수
- 신작 창작이 아닌 기존 작품 편작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될 시 환수조치 및 2년간 지원 제외
  ※ 신작창작 제작발표 활동 세부 신청안내 참조

① (시각 · 문학) 세부 신청 안내 ※공통사항 필히 숙지

■ 사업개요

- 시각 · 문학 분야 신작 창작 및 발표활동 지원

■ 지원규모

- 3백만원~1천만원

■ 지원금 지급방법

- 사업시행 1개월 전에 교부하며, 사업에 따라 분할지급 할 수 있음
  - 교부신청, 사업계획서 제출 시 신작 창작 증빙자료[1] 등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
    ※ 창작작품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기존 · 편작 작품으로 판결될 시 환수조치

■ 지원신청 대상

- 대상사업 : 2018. 12. 31일까지 창작집 발간 및 전시 가능한 사업
  ※ 단, 기 발표된 작품 또는 편작은 신규 창작으로 인정하지 않음(지원제외)
  ※ 기 발표된 작품 또는 편작이라고 판정되었을 경우 지원취소 및 보조금 환수
- 장 르 : 시각 · 문학분야 전체 장르

■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일인이 장르 (시, 시조, 소설(단/장편), 평론, 희곡, 동시, 동화)간 중복신청 불가
- 심사 제외 대상
  - 기존에 공개된 작품 지원 불가(2018년도 신작 및 미발표 작품 이어야함)
  - 제출원고 중 기 발간된 개인 작품집에 수록된 원고가 포함되어 있거나, 문예지, 신춘문예, 신인문학상 등에 발표된 작품 지원불가
  - 현직 교사·교수(교육관련 부처의 자기개발, 활동 등의 명목 지원)는 지원하지 않음
  - 타인의 작품이나 표절작품이 포함된 경우 지원불가
  - 타 공공기관 기금 수혜 후 성과보고(출판 및 정산)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
  - 기타 재단의 '지원신청 제외 대상자'에 해당하는 경우

(중요 공지) : 대표(개인)의 경우 타 소속단체까지 적용됨을 유념하여 진행 하시기 바람.
⇒ 기존 발표작 및 편작이라고 신고(정확한 근거를 제시)하는 단체는 익년도 가산점 부여함.

1) 책자발간 원고, 자료집 시안, 출품작품 작가 및 사진 이미지, 도록 시안, 전시 대관 확인서 등

② (공연 · 다원) 세부 신청 안내 ※ 공통사항 필히 숙지

■ 사업개요

- 신작창작 공연작품을 지원하여 창작활성화 및 우수작품 발굴

■ 지원규모

- 3백만원~2천만원

■ 지원금 지급방법

- 사업시행 1개월 전에 교부하며, 사업에 따라 분할지급 할 수 있음
  - 교부신청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신작 창작 증빙자료[2] 등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
    ※ 창작작품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기존 · 편작 작품으로 판결 될 시 사업취소 및 환수조치

■ 지원신청 대상사업(장르)

- 대상사업 : 2018년 경남도내 행사장에서 발표되는 사업
- 장르
  - 연극 : 모든 연극작품의 기존작품 편작이 아닌 **신작창작 작품**
  - 무용 : 모든 무용작품의 기존작품 편작이 아닌 **신작창작 작품**
  - 음악 : 모든 음악작품의 기존작품 편작이 아닌 **신작창작 작품**
  - 전통 : 모든 전통예술의 기존작품 편작이 아닌 **신작창작 작품**
  - 다원 : 탈장르, 실험적 복합예술 신작창작 작품

■ 신청 시 유의사항

- **신작 창작이 아닌 기존 작품 편작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될 시** 환수조치 및 2년간 지원 제외

(중요 공지) : 대표(개인)의 경우 타 소속단체까지 적용됨을 유념하여 진행 하시기 바람.
⇒ 기존 발표작 및 편작이라고 신고(정확한 근거를 제시)하는 단체는 익년도 가산점 부여함.

2) 공연대본(시나리오), 악보, 공연 팜플렛 시안, 공연 대관 확인서 등

나. 예술서적발간 활동 ※ 공통사항 필히 숙지

■ 사업개요

- 예술 창작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활성화
- 원고 수집을 위한 워크숍, 토론회 진행 및 최종 자료를 책으로 발간

■ 지원신청 자격 : 문화예술협의 단체(예총, 민예총(시·군 단위포함))

※ 월간지, 잡지성격, 종교성격, 국·도·시·군 문화재관련 등은 지원불가

※ 국·도에서 지원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 지원불가

■ 지원내용

- 당해년도 발간 가능한 서적에 대한 인쇄료, 원고료 등 지원(자료발간까지)
- 최종 조사 자료 책자 발간비(발간물 기준으로 최소 200쪽 이상의 분량)
- 지원장르 : 문화예술 전체분야

■ 지원규모 : 3백만원 ~ 2천만원

- 대상사업 : 예술현장에 대한 원고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단행본 형태의 자료집 발간물 기준 최소 200쪽 이상의 분량이어야 함(목차 등 제외)

■ 지원금 지급방법

- 사업시행 1개월 전에 교부하며, 사업에 따라 분할지급 할 수 있음
  - 교부신청, 사업계획서 제출 시 증빙자료[3] 등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

■ 첨부자료

-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신청서
- 최근 3년간 실적(2015~2017) 및 증빙자료
- 단체등록증, 단체 고유번호증

3) 출판계약서, 원고 70%이상 또는 최종원고 등

■ 주의사항

- 현실성 있는 예산산출과 보조 받을 수 있는 최소의 금액을 신청 할 것
- 기존의 발표내용 부분은 지원하지 않음(단, 연속성 부분은 인정)
- 원고 부분의 명확성과 인력운용 등 기획단계 철저히 기록
- 선정되었으나 최초 지원신청 계획서 내용의 30%이상 변경 될 경우 선정취소, 보조금반납, 익년도 제외 등 불이익
- 보조금으로 협회장 및 단체대표에게 활동비(인건비)를 지급 할 수 없음
- 현직 교사·교수(교육관련 부처의 자기개발, 활동 등의 명목 지원)는 지원하지 않음
- 언론, 학교 및 운영단체, 국도 지원 동일사업, 전통분야이지만 종교 성격의 사업, 종교성격의 친교단체 활동사업 및 행사 지원불가

■ 지원신청방법

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(http://www.ncas.or.kr) ▸ 로그인(아이디 없을 경우 회원가입) ▸ 지원신청 ▸ 문화예술육성지원 ▸ **예술서적 발간** ▸ **①문학, ②시각예술, ③연극, ④무용, ⑤음악, ⑥전통예술, ⑦다원예술** 해당분야클릭 ▸ 지원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▸ 저장하기 ▸최종제출하기 클릭

다. 예술일반 활동 ※ 공통사항 필히 숙지

■ 사업목적

- 기초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전문예술인, 예술단체들의 문화예술 활동 기반조성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강화

■ 지원신청 자격

- 경남지역 소재지로 설립일 3년 이상이며, 단체등록증 발급받은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 경남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**예술단체 및 협의단체**
  ※ 설립기준은 단체 증빙서류로 확인(고유번호증, 단체등록증 등) 함.
- 단체등록증 발급받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
- 3년간 도내 활동 실적 증빙이 되는 도내 거주 **예술인**(개인 신청자)
  ※ 개인은 2년간 휴식년 적용.
  ※ 2015년도 수혜⇒ 2018년도 신청가능/ 2016년도 수혜 ⇒ 2019년도 신청가능

■ 지원내용

-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일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쇄료, 시설사용료, 출연료, 조명(음향)임차 등 지원(정기전, 정기공연 등)
- 소규모 예술활동 사업(ex. **레파토리공연, 정기연주회, 정기전시회** 등)
- 지역 공공장소 및 도민공간(주민자치센터, 문화예술회관, 공원 등) 등에서 지역민들과 문화예술을 함께 나누는 발표활동 우대
- 지원장르 : 문화예술 전장르
  ※ 예술동호회, 아마추어 단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에 의거 지원하지 않음.

■ 지원규모 : 1백만원 ~ 5백만원

※ 언론, 학교, 종교성격, 국·도·시·군 문화재 관련 행사 등은 지원불가
※ 국·도에서 지원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 지원불가

■ 첨부자료

-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신청서
- 최근 3년간 실적(2015~2017) 및 증빙자료
- 단체등록증, 고유번호증(개인은 주민등록초본)

■ 주의사항

- 계획(기획)단계에서 현실성 있는 예산산출과 보조 받을 수 있는 최소의 금액을 신청 할 것
- 계획(기획)하는 프로그램 내용의 저작권 사용 확인서 제출
- 선정되었으나 최초 지원신청 계획서 내용의 30%이상 변경 될 경우 선정취소, 보조금반납, 익년도 제외 등 불이익
- 보조금으로 단체대표 및 개인신청자 본인에게 출연료를 지급 할 수 없음
- 기존 임차하여 상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임차료 지원불가
- 언론, 학교 및 운영단체, 국도·시·군 지원 동일사업, 전통분야이지만 종교 성격의 사업, 종교성격의 친교단체 활동사업 및 행사, 교사(교수)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 지원불가
- 단체명이 동일한 두 단체에서 지원신청 할 경우(비록 고유번호증의 번호, 대표자 성명, 발급기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단체명이나 사업명이 동일할 경우)에는 두 단체 모두 심사에서 배제

■ 지원신청방법

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(http://www.ncas.or.kr) ▸ 로그인(아이디 없을 경우 회원가입) ▸ 지원신청 ▸ 문화예술육성지원 ▸ **예술일반 활동** ▸ **①문학, ②시각예술, ③연극, ④무용, ⑤음악, ⑥전통예술, ⑦다원예술** 해당분야클릭 ▸ 지원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▸ 저장하기 ▸ 최종제출하기 클릭

라. 원로예술인 활동 ※ 공통사항 필히 숙지

■ 사업목적

- 원로예술인의 작품세계를 정립하고 예술적 성과 조명을 통해 지역문화예술계의 품격 향상

■ 지원신청 자격

- 만 65세 이상 경남지역 연고지로 5년 이상 활동하신 전문예술가(개인)

  ※ 2018년 1월 1일 기준 /' 53년 이전 출생자 만 지원가능

- 3년간 도내 활동 실적 증빙이 되는 도내 거주 예술인(개인 신청자)

  ※ 개인은 **2년간 휴식년 적용.**

  ※ 2015년도 수혜⇒ 2018년도 신청가능/ 2016년도 수혜 ⇒ 2019년도 신청가능

■ 지원내용

분야	지원내용	비고
공연예술	- 공연예술분야(음악, 무용, 연극, 전통예술)의 단독 공연(단독 발표회, 독주회 등)	
시각예술	- 시각예술 분야(회화, 서예, 판화, 입체, 설치, 영상, 사진, 공예, 건축 등)의 개인 전시회	
문학	- 신규 · 창작 형태의 문학 작품집 발간	

※ 아마추어(생활문화) 문화 활동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에 의거 지원하지 않음

■ 지원규모 : 총 20명 / 각 5백만원 정액지원

※ 언론, 학교, 종교성격, 국·도·시·군 문화재 관련 행사 등은 지원불가

※ 국·도에서 지원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 지원불가

■ 첨부자료

-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지원신청서
- 최근 5년간 실적(2013~2017) 및 증빙자료
- 주소지 확인 증명서(주민등록초본) 제출

■ 주의사항

- 지원 예산이 5백만원 정액이므로 지원신청 예산 기록시 주의 할 것
- 계획(기획)하는 프로그램 내용의 저작권 사용 확인서 제출
- 선정되었으나 최초 지원신청 계획서 내용의 30%이상 변경 될 경우 선정취소, 보조금반납, 익년도 제외 등 불이익
- 보조금으로 개인신청자 본인에게 사례비로 지급 할 수 없음
- 기존 임차하여 상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임차료 지원불가
- 언론, 학교 및 운영단체, 국도·시·군 지원 동일사업, 전통분야이지만 종교 성격의 사업, 종교성격의 친교단체 활동사업 및 행사, 교사(교수)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 지원불가

■ 지원신청방법

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(http://www.ncas.or.kr) ▸ 로그인(아이디 없을 경우 회원가입) ▸ 지원신청 ▸ 문화예술육성지원 ▸ **원로예술가 활동** ▸ **①문학, ②시각예술, ③연극, ④무용, ⑤음악, ⑥전통예술, ⑦다원예술** 해당분야클릭 ▸ 지원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▸ 저장하기 ▸ 최종제출하기 클릭